

금전채권신탁계약서

유안타증권 주식회사

[](이하 “위탁자”라 한다)와 유안타증권주식회사 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금전채권신탁계약(이하 “본 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원본을 신탁하고,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 후 추심·관리·운용·처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수익권”이라 함은 신탁재산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부수하는 수익자의 권리를 의미한다.
2. “신탁원본”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을 말한다.
3. “신탁기산일”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효력발생일인 []년 []월 []일을 말한다.
4. “신탁재산”이라 함은 신탁원본과 수익을 의미한다.
5. “영업일”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.

제3조 (신탁원본 및 수익)

- (1) 신탁원본의 내역은 별첨1. 기재 채권 목록과 같으며, 신탁원본을 수탁자가 추심·관리·운용·처분함으로써 취득한 자산을 수익으로 한다.
- (2) 제(1)항에 의하여 수탁한 신탁원본은 다음과 같다.

신탁원본 : 액면가액(추정액) 金 원整

- (3)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금전채권을 추가신탁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적용된다.

제4조 (금전채권의 범위)

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은 []년 []월 []일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금전채권을 말한다.

제5조 (금전채권의 적격)

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금전채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구성한다.

1. 금전채권의 취득이 관계법령이나 위탁자의 정상적인 영업방식과 내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
2. 금전채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송 기타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
3. 신탁가능한 금전채권으로서 이에 대하여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의 처분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며, 기타 금전채권의 신탁을 제한하는 특약이나 법적인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
4. 금전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유효하게 존속할 것
5. 금전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에 무효·취소 사유 등 의사표시의 하자나 서류상의 하자가 없을 것
6. 금전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에 해지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

제6조 (수익자)

본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로 한다.

제7조 (금전채권의 양도와 대항요건의 취득)

- (1) 위탁자는 신탁기산일에 신탁원본과 이에 기하여 발행·교부되는 어음 및 지연배상금 채권 기타 이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를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그 관계서류를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한다. 또한 향후라도 신탁재산과 관련한 금전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에 대한 서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한다.
- (2) 위탁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본 신탁에 따르는 금전채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위탁자는 수탁자 또는 수임인(제19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음)이 채권의 추심 및 관리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협조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(4) 본조에 따른 권리의 이전절차 또는 대항요건 취득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해당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취득한 항변으로 수탁자에게 대항함으로써

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8조 (신탁재산의 표시)

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비용부담으로 수탁자가 신탁의 등기나 등록을 하고,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자 다른 재산과 구분되도록 신탁의 표시나 기재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 (수익권증서의 발행)

- (1) 수탁자는 본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의미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한다.
- (2) 전항의 수익권 증서는 수익지급에 있어서 서로 다른 수종으로 발행할 수 있다.

제10조 (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)

- (1) 수익자는 수탁자의 확정일자에 의한 사전 서면 승낙시 본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. 수익권 양도의 경우 수탁자는 해당 수익권을 양도하려는 자로부터 구 수익권증서를 회수한 뒤 신 수익권증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한다.
- (2) 전항에 따라 수익자가 본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제3자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담보권자가 본 계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,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받을 의사표시와 본 계약상의 수익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첨 2. “금전채권신탁 수익권 양도·양수 의뢰서”를 수탁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위탁자의 확인 및 보장)

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계약에 따른 신탁원본의 신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.

1. 위탁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.
2. 위탁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탁자에게 신탁원본을 신탁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.
3. 위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계약에 따른 신탁원본의 신탁에 필요한 내부수권절차 및 정부의 인·허가 기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구비하였다.

4.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신탁원본의 신탁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은 관계법령, 위탁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어떠한 계약, 법원의 재판,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·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.
5. 본 계약에 따른 신탁원본의 신탁에 의하여 해당 신탁원본에 대한 권리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하게 이전된다.
6. 본 계약에 따른 신탁원본의 신탁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며, 위탁자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을 하는 것이 아니다.

제12조 (수탁자의 확인 및 보장)

수탁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계약에 따른 신탁원본의 신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장한다.

1. 수탁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로서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금전채권을 신탁 받을 권한과 능력이 있다.
2. 수탁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을 적법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.
3. 본 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신탁원본의 신탁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은 법령에 및 그밖에 수탁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어떠한 계약이나 법원의 재판,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지시·권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.

제13조 (신탁기간)

본 계약에 따른 금전채권의 신탁기간은 신탁기산일부터 []년[]월 []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위 신탁기간은 위탁자, 수익자 및 수탁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.

제14조 (신탁재산의 지급)

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에서 제17조 소정의 조세 및 비용과 제18조 소정의 신탁보수를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.

제15조 (계약의 중도해지)

본 계약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신탁사무의 처리가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신탁을 해지하는 것이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위탁자, 수익자 및 수탁자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거나 신탁의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

중도해지 될 수 있다.

제16조 (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교부)

- (1) 본 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은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본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날에 그때까지 미지급된 제17조 소정의 조세 및 비용과 제18조 소정의 신탁보수를 공제한 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 만약 신탁이 종료되는 날이 수탁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이를 지급한다.
- (2)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본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재산을 현상대로 교부할 수 있다.
- (3)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는다.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, 수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때로부터 **1개월 이내에** 승인여부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때 을은 “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” 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- (4)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**1개월 이내에**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

제17조 (조세 및 비용)

본 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, 법률자문료 및 법적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, 기타 신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청구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.

제18조 (신탁보수)

- (1) 수탁자는 본 신탁에 따른 보수를 수익자에게 청구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.
- (2) 신탁보수율은 []을 기준으로 하여 []로 하고, 신탁보수의 취득시기는 []로 하되, 수탁자 및 수익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19조 (신탁사무의 위임)

수탁자는 본 신탁사무 중 관계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 또는 제3자(이하 “수임인”이라 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1. 신탁재산의 추심 및 관리 사무
2. 신탁재산과 연관된 사무로서 수탁자와 수임인 사이에서 별도로 체결하는 약정에서 정하는 사무
3.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사무

제20조 (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내역 통보)

- (1)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또는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할 때까지 신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다만, 위탁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
- (2) 수탁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수익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1조 (선관주의의무 및 구분관리의무)

- (1)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에 따른 신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(2)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 및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22조 (계좌의 통지 및 인감의 신고)

- (1) 수익자는 본 계약 제14조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지급받게 될 계좌를 수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, 위탁자, 수익자 기타 신탁관계자는 본 신탁과 관련하여 사용할 사용인감을 미리 수탁자에 신고하여야 한다. 계좌와 사용인감의 변경시에도 이와 동일하다.
- (2) 수탁자는 본 신탁과 관련된 제반서류 등에 날인된 인영을 전항에 따라 신고된 신고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 수탁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수익의 교부 및 지급청구서 등의 처리를 한 경우 수탁자는 사용인감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·위조·변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23조 (사고 또는 변경사항의 신고)

(1) 위탁자, 수익자 기타 본 신탁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

1. 성명(또는 상호), 주소, 대표자, 대리인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
2. 신탁원본 관련 계약서, 수익권증서 또는 사용인감 등을 분실하였거나 이들이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
3. 제3자로부터 통지 받은 사항 중 수탁자의 본 신탁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
4. 기타 본 신탁과 관련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수탁자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은 사항

(2) 전항의 통지가 지체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장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24조 (신탁재산 명세의 열람)

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열람청구를 받은 경우, 수탁자의 영업시간 이내에 언제든지 신탁재산의 명세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.

제25조 (신탁원본 및 수익의 보전 금지)

- (1)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수익권에 대한 이익의 보충이나 원금의 보전을 하지 아니한다.
- (2) 본 신탁은 경우에 따라서는 신탁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.

제26조 (기타)

- (1) 위탁자, 수익자 그리고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당사자들의 권리, 의무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.
- (2) 전항에 따라 체결되는 추가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감독규정, 기타 관계규정, 개별 약정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.

제27조 (준거법)

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.

제28조 (관할법원)

본 계약의 체결, 이행 또는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정하는 관할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.

(다음의 기명날인 페이지를 위해 이하 여백)

본 계약이 체결된 증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 하였다.

[]년[]월[]일

위탁자 : []

주소 []

대표 (인)

수탁자 : 유안타증권 주식회사

주소 []

대표이사 [] (인)

(별첨 1.) 채권목록

(별첨 2.)

금전채권신탁 수익권 양도·양수 의뢰서

[]와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[]년[]월[]일 체결한 금전채권신탁계약(이하 “본 계약”이라 함)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양수·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신탁재산	신탁원본 및 수익
신탁기간	[]년 []월 []일부터 []년 []월 []일까지
수익자의 의무	수탁자에 대한 신탁보수 지급 및 조세 등 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의 부담 등 기타 관련계약서에서 정하여진 사항
기 타	이 상품은 단독운용상품으로 금전채권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신탁원본액면가액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.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재산은 현상대로 교부합니다.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수익권을 양수함에 있어, 본 계약에 따른 양도인의 해당 수익권자로서의 의무를 그대로 준수합니다.

양도인 : []

주소 []

대표 (인)

양수인 : []

주소

대표 (인)

상기 금전채권신탁 수익권 양수·도를 정히 승인합니다.

수탁자 : 유안타증권 주식회사

주소 []

대표이사 [] (인)